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가단14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성년후견인 B

피고1. C

2. 대한민국

변론 종결2020. 8. 20.

판결 선고2020. 9. 17.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12. 12. 접수 제139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12. 26. 접수 제146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E 출생, 1998. 11. 25. 사망)의 아들로, 망인은 1962. 10.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은 망인과 자신의 부친의 성명이 동일한 점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12. 12. 접수 제13933호로 2014.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협의취득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 12. 26. 접수 제14654호로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 C은 2016. 12. 12.경 전남 장흥군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위 F 및 G 임야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H 사무실의 직원에게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재된 D의 주소에 오기가 있으나 위 D은 피고 C의 부친임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위 직원을 속이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대하여 권리자를 피고인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계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4. 11.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 C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 C은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 C은 2016. 12.경 전남 장흥군 I 에 있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게 '내 소유인 위 G임야 및 임야에 있는 편백나무 520주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니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상금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임야 및 편백나무 520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이전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협의 취득에 의한 보상금 명목으로 20,882,800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이 아닌 피고 C이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권리자로부터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은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토지등기부를 보고 피고 C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한 것으로, 위 토지를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산과 달리 부동산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여 토지수용법상 수용과 달리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남수진

별지